



- ▶ COVER STORY:  
AEO! 지금 시작하세요! ... 1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5
- ▶ FTA NEWS:  
한-중 FTA 협상 개시 ..... 2
- ▶ WHERE IS GRACE CHANGE?:  
상시 위기의 시대 ..... 6
- ▶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입 허가 제도①..... 3
- ▶ ABOUT WRITERS ..... 6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관세청은 8 일 지난 2009 년 AEO 제도가 도입된 지 3 년 만에 300 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미국, EU, 중국 등 외국세관에 비해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AEO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312 개 업체를 공인해 세계 6 위 수준의 공인업체를 보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AEO! 지금 시작하세요!

### AEO 공인 현황

구분	수출 업체	수입 업체	관세사	포워드	운송 업체	보세 구역	선사	계	
연도	'09	5	5	1	4	2	3	1	21
	'10	27	28	11	4	1	1	2	74
	'11	31	35	15	15	1	5	2	104
	'12	19	17	27	39	6	4	1	113
계	82	85	54	62	10	13	6	312	

출처 : AEO 진흥협회 (2012.5.15 일 기준)

중종 보이고는 한다.

### 3. 왜 AEO 인가?

1. AEO의 공인주체는 대한민국 관세청

AEO의 공인주체는 대한민국 관세청이라는 단 하나의 기관에 한정된다.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다른 인증 기관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AEO 공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의 주요 업무로서 진행되는 것이다. 더구나 MRA를 확대시켜 가려는 계획을 고려할 때 상대국이 대한민국의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가 결코 단순해지거나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확대 시행

중소기업의 경우 AEO 심사준비를 위한 컨설팅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감소되거나 또는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의 『12년 AEO 공인 종합심사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컨설팅 비용의 경우 '11년의 1840만원(최대금액)에서 크게 향상된 2240만원까지

지원되며, 또한 업체당 2인까지 AEO 공인 전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4. 지금 시작하세요!

흔한 말로 AEO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인의 필요성과 혜택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AEO 공인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 상황에 만족하시겠습니까? AEO 공인을 받으시겠다면, 그 시기를 저울질 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시작하는 것만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고대웅

[duko@customsservice.co.kr](mailto:duko@customsservice.co.kr)

### 1. AEO 공인업체 300 개 돌파 및 세계 6 위 AEO 공인업체 보유

국내 300 개 수출업체가 AEO 공인을 받아 세계 6 위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기사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AEO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인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전 세계적으로 17 개가 체결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 개국과 체결되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체결된 국가가 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향후 AEO 공인을 받은 업체와 받지 못한 업체로 구분되어 AEO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나중에 받으면 더 쉽고 저렴하지 않을까?

AEO 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중소기업들은 AEO 공인 획득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상 언제 심사 준비를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비용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기업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AEO 공인을 민간단체의 인증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다른 인증의 경우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심사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현재에는 양질의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을 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가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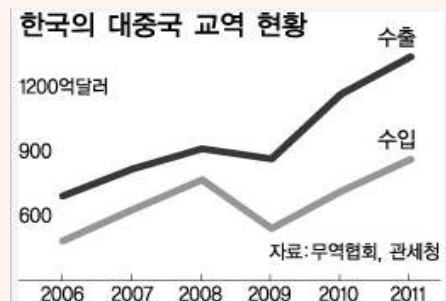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개방 이래 지난 30 여년간 한-중 양국은 적극적으로 FTA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한-중 FTA 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한-중 FTA 가 체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와 미국, 유럽연합(EU)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 FTA 타결을 위해서는 여러 난제가 쌓여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1. 한-중국 FTA 협상 개시

지난 2 일, 한국 및 중국 통상장관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첫 협상이 14 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2005 년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뒤 7 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협상 운영세척에서 1)포괄적 FTA 추진 2)민감 분야 고려 3)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정합성 4)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민감 품목<sup>1</sup>에 대한 배려였다.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협상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2 단계 협상안을 마련하였고 1 단계 협상에서 우선 민감 분야를 어떻게 보호 할지에 대해 합의하고 일괄 타결 방식의 2 단계 전면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중국 FTA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무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한-중국 FTA 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중국 교역 현황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보고서<sup>2</sup>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출 규모는 1341 억 9000 만 달러로 지난 1992 년 수교 당시 26 억 5000 만 달러에서, 지난 20 년 간 50 배 증가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를 11%에 비해 2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또 지난 20 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는 2725 억 4000 만 달러로, 같은기간 전체 무역흑자 2396 억 9000 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수교 이후 대 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98%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0 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6%포인트로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산업 구조적 인 면에서도, 대중국 수출을 통해 가축과 섬유 등 경쟁력이 낮아진 제품의 활로를 제공하고 동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가속화 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중국과의 분업생산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기반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 의 문제점 역시 상존하고 있으며, 첫째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전 세계에서 2 번째로 높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 의존도는 30%를 넘어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국내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흔들일 수 있다. 또 한국의 가공수출 비중이 48.9%이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향상으로 향후 가공수입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공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이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에 부품, 반제품 및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투자연계형 수출이라는 점과 대중국 수출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한-중 FTA 가 체결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 3. 한-중 FTA 체결 기대효과

### (1) 중국 내수진출

한-중 FTA 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FTA 체결로,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위주에서 내수시장 공략이 가속될 수 있다. 특히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은 관세 환급을 받아 FTA 효과가 미미하지만, 내수시장용 수출은 관세환급이 없으므로 FTA 효과가 크다.

### (2) 투자장벽의 완화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 등 투자장벽으로 인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어려움도 한층 완화된다. 또한, 한-미, 한-EU, 한-중 FT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증가될 전망이며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3) 개성공단 투자 유인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

중국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인 만큼, 개성공단

## 전체 교역 중 중국 비중



생산품도 한-중 FTA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투자 유인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에도 기여할 수 있다.

### (4) 기타 효과

민간공동연구결과 한-중 FTA 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GDP 는 3.1%~3.2%, 총 수출은 5.4%~5.5%, 총 수입은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중 FTA 발효 시 GDP 가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은 발효 후 10 년 이내에 19~33 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sup>

<sup>1</sup>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된다.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의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및 대우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다.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sup>2</sup> "한-중 수교 20 주년, 대중국 수출 성과와 과제"

<sup>3</sup> 삼성경제연구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조정용  
jycho@customsservice.co.kr

## 수출입 허가 제도①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외무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주요제도로는 대외무역경영자의 자격관리제도,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관리제도, 국제서비스무역관리제도, 변경무역관리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의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하고 있는데 수출입허가제도는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 1. 수출입허가제도의 의의

수출입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정책·대외무역 계획과 국내시장의 수요에 의해 수출입경영권, 경영범위, 무역국가별, 수출입상품 품명·수량 등에 대하여 전면적 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허가 제도'는 수출입상품허가증관리를 주체로 하는 국가대외무역 심사비준제도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수출입허가제도의 기본내용으로는 수출입 경영권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 하는 상품의 쿼터관리와 허가증관리, 수출입 상품의 분류관리, 대외무역국가별 정책 등이 있다. 수출입허가제도는 국가의 대외경제무역 거시 관리의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관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2. 수출입경영권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경영권은 중국기업이 대외적으로 수출입 무역 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경영범위란 기업이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 상품종류와 서비스 항목을 국가가 허가하는 것으로 기업 생산경영 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대외무역을 경영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받고 대외 무역경영자격을 취득해야만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자신의 상호와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 ② 명확한 대외무역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③ 대외무역업무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자금, 그리고 전문 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 ④ 위탁 수출입실적이 규정에 달하거나 필요한 수출입재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⑤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상의 기본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대외 무역주관 부문에 대외무역경영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비준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 어디서나 대외무역 업무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각 성·시·자치구 및 각 지방경제무역주관부문의 비준으로 대외 무역경영권을 취득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에서만 대외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주요 기업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상무부(商務部) 소속의 각종 외무전문수출입 총공사(外貿專業進出口總公司) 및 그 지점(分支機構)
- ② 국무원 각 부·위 소속의 공무공사(工貿公司)
- ③ 성·시·자치구 소속의 각종 수출입 공사
- ④ 외상 투자기업
- ⑤ 자영 수출입 권한이 있는 생산기업
- ⑥ 임대수출입회사(租賃進出口公司)
- ⑦ 상무부가 대외무역과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비준한 기타 공사(公司)와 회사(單位) 관련기업이 대외무역주관부문의 비준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범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입허가증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전제 하에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분류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경영할 수가 있다.

### 3. 수출입 제한상품의 쿼터관리와 허가증관리

#### 1) 쿼터관리와 허가증관리의 정의

쿼터관리란 국가가 일정시기에 어떤 상품의 수출입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관리조치를 말한다. 규정된 기한과 쿼터이내의 화물은 수출입이 가능하나 기한과 쿼터를 초과하는 것은 수출입할 수 없다. 허가증관리란 대외 무역경영자가 국가규정에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출입허가증을 취득 하여야만 한다. 허가증은 국가로부터 대외무역 경영회사가 모종의 화물을 수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을 감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쿼터관리와 허가증 관리는 국가가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통하여 국가는 직접적으로 모종 상품의 수출입 총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본국의 경제가 수입상품으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본국의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일련의 상품에 대한 수출입에 대하여 모두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쿼터와 허가증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서로 결합하여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중국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은 쿼터허가증관리이다. 즉 쿼터와 허가증을 결합한 형태인데, 쿼터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면 반드시 허가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쿼터수량의 통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쿼터를 초과한 수출입이 국가에 미치는 각종 불리한 영향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2) 중국의 수입상품 쿼터와 허가증관리

중국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국무원 수권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및 공포한 수입쿼터 또는 허가증관리 실시대상 상품이다. 현재 수입쿼터 또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으로는 전기제품과 일반상품 그리고 비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허가증 상품으로 대별된다.

- ①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전기제품'이란, 국가 산업정책과 업종발전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입으로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나 수입이 과다할 경우 국내 관련 산업발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과 수입구조·산업구조 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제품 및 국가외환수지에 위급한 전기제품 등이다.
- ②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일반상품'이란 전기 제품을 제외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연관이 있어 쿼터로 수입수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 ③ '비 쿼터관리의 수입허가증 상품'이란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전기제품과 일반상품을 제외한 상품 중 국가가 직접 수입허가증을 통해 수입을 통제하는 상품을 말한다. 수출입 쿼터 또는 허가증관리의 상품목록은 매년 상무부에서 대외에 공포하게 되는데 국가정책과 대외경제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 시장변화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 다음호에는 수출입쿼터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연재하겠습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창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부가세감면부호 부호내역 변경,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사항

##### ▣ 『부가세감면부호 부호내역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1.개정이유

감면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입통관 시스템상 부가세감면부호 내역을 변경

###### 2.개정내용

부가세감면부호	부호내역
K120100	부가세법 12-2-12 호 및 령 44 조 - 관세법 99 조
K120200	부가세법 12-2-12 호 및 령 44 조 - 관세법 101 조

[현행] 부가세감면부호 K120100, K120200 인 경우 관세법 제 99 조 또는 제 101 조의 관세 감면 부호만 허용

[변경] 부가세감면부호 K120100 인 경우 관세감면부호는 관세법 99 조만 허용, 부가세 감면부호 K120200 인 경우 관세감면부호는 관세법 101 조만 허용

###### 3.시행시기

2012 년 5 월 2 일 (수입신고일자 2012. 05. 02 부터 적용)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1.개정이유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및 신설

###### 2.개정내용

○ "최종소비자"라 함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형태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 개인 등을 말한다.

○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제조업체(단순가공 제외) 및 식당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1> 22 호와 2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산수유 < 지정기간: 2012.5. 1~2015.4.30 >

1211.90-9099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edible)

\* 오미자 < 지정기간: 2012.5.1~2015.4.30 >

1211.90-9093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edible)

###### 3.예정시행시기

2012 년 5 월 1 일(<별표 1> 22 호(산수유) 및 23 호(오미자)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되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 에는 시행일 반출분 부터 적용)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주요 개정

###### 1.개정이유

품목분류 변경사항 반영

###### 2.개정내용

1) LIVING BOX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4202.92-2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6307.90-9000 호

2) LOCKING NUT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 8412.90-9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 7318.16-0000 호

3) LINEAR BALL BEARING

○ 변경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 8482.10-1000 호, (2012 HSK) 제 8482.10-9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2007 HSK) 제 8482.10-2000 호, (2012 HSK) 제 8482.10-2000 호



###### 3.시행시기

2012 년 5 월 1 일(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름)

##### ▣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 1.개정이유

관세법 제 226 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추가로 인한 고시개정

###### 2.개정내용

○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내역 - 8509.80-400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는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3.시행시기

2012 년 5 월 3 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선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㉔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 (HQ548188)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1. 거래사실

- 1) 구매대리인(A)는 수입자(I)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산주문에 대하여 I 의 상품이 First Cost Program 하에서 공급될 지 또는 GLC 프로그램 하에서 공급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2) I 가 상품조달을 A 에게 지시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서비스로 시행될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는 전적으로 I 가 결정함. A 는 그 서비스 방식을 바꿀 권한이 없음.
- 3) 이미 제출된 관련 협정들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서 A 에 대한 I 의 통제력이 명확하게 드러남.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음.  
 가. A 는 "Principal, 즉 I 의 지시로" 협상함  
 나. A 는 "지시를 받은 때", "I 의 이름으로", "I 의 계정으로" 생산자에게 주문함

다. A 는 "사전에 I 에게 특별히 지시 받지 않는 한 I 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약이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라. A 는 "I 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선적을 명함  
 마. I 가 A 에게 비용청구 등에 대해 "지시함"  
 바. A 는 I 가 "요청 시(upon request)" 또는 "요구하면(as principal may require)" 상품 관련정보(standards information),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

사. A 는 생산자와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음  
 아. A 는 I 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어떤 원자재도 공급할 수 없음.

4) A 의 진행절차는 진정한 구매대리인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함.

5) I 는 손상·불량 상품에 대한 A 의 클레임 정책에 귀속되지 않음.

6) 구매 대행 약정과 관련한 수입물품 클레임 처리 정책은 I 가 원하는, 대리인으로서 클레임에 대한 협상과 조정 역할을 충분히 수행케 하기 위한 A 의 서비스 범주를 이미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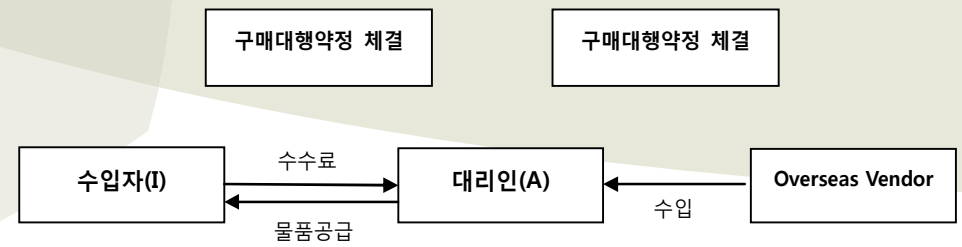
7) 그 약정에 따르면 A 가 클레임을 다루길 바라든 바라지 않든 손상되거나 불량인 상품에 관해 I 역시 판매 자에게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 참고로 이는 구매 대행 약정의 PARAGRAPH 9 ©에 I 가 판매 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음.

8) 책임의 범주는 서비스 상태에 대한 것임. 서비스 상태에 대해 A 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I 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9) A 는 손상·불량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그 이유는 A 는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고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매대리인의 역할과 모순되기 때문임.

### 2. 쟁점(Issue)

수입자 I 와 그의 자회사가 구매대리인 A 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임.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하며,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이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다. 진정한 구매수수료 여부는 각 사안의 관련요소에 따라 결정해야 함. 진정한 구매대행관계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진정한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리인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독립된 판매자로서 행동하거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그 관계규명의 결정적 요인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임.  
 라. 물품수배·검사·포장·선적준비 및 구매자를 대리하여 대금지급업무 수행하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임.

####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Jay-Arr Slimwear (1988)  
 대행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된 일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입자의 권리임.

나. New Trends Inc. (1986)  
 대리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함. 또한,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조사 함.

- ① 대리인의 행위가 주로 본인(수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 ② 대리인이 선적과 화물취급 및 그에 따른 비용에 책임을 졌는가?
- ③ 상업송장에 사용된 언어가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가?

- ④ 대리인이 물품의 손실, 파손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는가?
- ⑤ 대리인이 제조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는가?

#### 3) 쟁점검토

가. A 가 I 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진정한 구매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 구매대행약정의 조건에 따르면 A 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 의 지시와 통제하에 수행됨.

나. 이는 구매대행약정서의 다양한 조항에 의해 규명됨. 예를 들어, 약정서는 A 가 "Principal 즉, I 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지시된 때", "I 의 이름과, I 의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주문을 한다는 것을 규정함.

다. A 의 중요한 역할은 구매대리인의 소임을 다하여 ("A 는 본인의 지시하에 본인을 위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협상할 것을 조력한다"는 조항에 의거) I 를 위해 최적가와 최고품질을 찾는 것임.

라. HRL 548163 에 의하면 A 는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 가 A 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 됨.

#### 4. 결정(Holding)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A 는 구매대리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I 가 A 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진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상시 위기의 시대



장승희 대표 관세사

IMF! 이 단어가 우리의 의식에 또렷이 새겨진 '아시아 외환 위기'는 1997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1 년 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2 년 후의 '유럽 재정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재정 위기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위기의 발생주기는 짧아졌고, 그 지속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상시 위기시대에 대처하여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위기대응방안에 focus 를 두어야 함과 동시에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절감에만 치중하였던 보잉사가 결국 고객을 경쟁사로 빼앗기게 된 실패 사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비용절감을 추구함과 동시에 투자강화를 통한 가치증대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상시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전략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 하라고 합니다. 상시 위기의 시대만큼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이럴 때에 돌아가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 용혜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일을 찾아 하는 사람.
-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
-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 도움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여유 있는 사람.
-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허한 사람.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협조적인 사람.

위기를 잘 헤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AEO! 지금시작하세요!



고 대 웅 관세사 ([duko@customsservice.co.kr](mailto:duk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FTA 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협상 개시!



조 정 윤 관세사 ([jycho@customsservice.co.kr](mailto:jych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다수업체 FTA 인증수출자제도 컨설팅 다수업체
- FTA 원산지증명서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입허가제도①



임 창 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 선 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mailto: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⑤ 구매수수료해당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